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2
----------	-----

제출년월일 : 2017.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안 제2조)

-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가능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안 제3조)

-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재단의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며,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

다. 출연금의 지급(안 제4조)

- 재단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 지급

라. 결산서 제출(안 제5조)

-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연 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7. 4. 28. ~ 5. 18., 20일간)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지원 출연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연락처	(033) 330 - 2206